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
-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

4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
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반영 (안 제2조제2항)
 -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반영 (안 제3조~ 제4조)
(안 제6조제1항), (안 제8조), (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)
 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반영 (안 제6조)
-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항목 관련 법 규정 삭제 [별표2]

○ 검토 결과

-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
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 및 조례 제14조 관련 [별표2]의
과태료부과기준에서 별표 개정안과 같이 단순한 법조항을 삭제
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므로서
-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
발생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수거체계구축을 통하여
재활용 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
기여할 것으로 판단됨